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0가합55456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중소기업은행

원고승계참가인A 유한회사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용현

피고 1. B

2.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

3.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지

담당변호사 김용혁, 강송욱

4. F 주식회사

5. G 주식회사

피고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안의, 박해조

6.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문태원

변론 종결 2024. 8. 23.

판결 선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769,217,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2. 11.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890,166,232원 및 위 돈 중,

가.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10.11%,

나. 698,513,805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10.04%,

다.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10.01%,

라. 770,453,289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9%,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승계참가인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2,733,171,812원,

후순위파산채권은 위 돈에 대한 2020.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4.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승 계 참 가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승계참가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파산채권은

2,733,171,8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B,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돈 중 100,000,000원,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 J, L 주식회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돈 중 1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G, 피고 주식회사 I은 피고 B,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돈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나) 피고 B는 철강재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M을 운영해 온 자이다.

다) 파산채무자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보세창고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M이 수입하는 화물의 하역·운송·보관업무를 수행한 J 등으로부터 철강재 등 수입화물의 보관 등의 물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라) 피고 E, F, G, H은 각 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와 M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가) 원고는 2012. 9. 6. M과 사이에

일람불수입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여신한도금액을 미합중국 통화 1,000,000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의 경우 '달러'로만 표기한다)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여신한도금액을 5,000,000달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조건 변경·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M의 수출입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M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의 M에 대한 수입신용장 발행 가) M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고만 한다)에 소재하는 N으로부터 HOT ROLLED DEFORMED BARS 731,606KG(이하 '제1 수입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2019.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근거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의 발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M에 대한 378,600달러(다만 위 신용장대금은 이후 384,778.16달러로 변경되었다)의 취소불능화환신용장(신용장번호: O, 이하 '제1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M은 일본국에 소재하는 P로부터 WIDE FLANGE BEAMS 1,139,814KG(이하 '제2 수입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2019.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근거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의 발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M에 대한 일본국 통화 67,830,000엔(이하 일본국법화의 경우 '엔'으로만 표기한다. 다만 위 신용장대금은 이후 67,801,977엔으로 변경되었다)의 취소불능화환신용장(신용장번호: Q, 이하 '제2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다) M은 싱가포르 공화국에 소재한 R로부터 HOT ROLLED DEFORMED BARS 1,940,044KG(이하 '제3 수입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2019.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근거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의 발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M에 대한 907,950달러(다만 위 신용장대금은 이후 922,185.98달러로 변경되었다)의 취소불능화환신용장(신용장번호: S, 이하 '제3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라) M은 위 R로부터 HOT ROLLED DEFORMED BARS 1,437,395KG(이하 '제4 수입물품'이라고 하고, 제1, 2, 3, 4 수입물품을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이라고 통칭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2019.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근거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의 발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M에 대한 654,450달러(다만 위 신용장대금은 이후 657,720.07달러로 변경되었다)의 취소불능화환신용장(신용장번호: T, 이하 '제4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4) 이 사건 각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발행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운송인들은 위 각 수입물품을 선적하면서 이에 대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번호에 대응하여 '제○ 선하증권'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1 수입 물품	O U X	V	원고가 지시하는 자	W	HOT ROLLED DEFORMED BARS	731.606 MT	2019. 8. 27.
제2 수입 물품	Q Y AA	P	Z	WIDE FLANGE BEAMS	1,139,814 KG	2019. 10. 5.	
제3 수입 물품	S AB AD	V	AC	HOT ROLLED DEFORMED BARS	1,940.044 MT	2019. 10. 8.	
제4 수입 물품	T AE AG	V	AF	HOT ROLLED DEFORMED BARS	1,437.395 MT	2019. 12. 10.	

5)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입항 및 보관 등 가) C는, K과 사이에 K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AH 소재 보세창고(이하 'AI 보세창고'라고 한다)에 C가 보관하기로 한 물품을 장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L과 사이에 L이 운영하는 AJ 소재 보세창고(이하 'L 보세창고'라고 하고, 위 각 보세창고를 '이 사건 각 보세창고'라고 한다)에 C가 보관하기로 한 물품을 장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M은 J에 M이 수입 내지 반입하는 이 사건 각 수입물품 등에 관한 하역, 보관, 운송업무를 위탁하였고, J는 C에게 이 사건 각 수입물품 등의 보관업무를 재위탁하였다.

다) C는 2019. 8. 30. 인천항에 입항한 제1 수입물품을 2019. 9. 11. AI 보세창고에 보관하였고, 2019. 10. 9. 인천항에 입항한 제2 수입물품은 2019. 10. 14. L 보세창고에 보관하였으며, 2019. 10. 11. 인천항에 입항한 제3 수입물품은 2019. 10. 17. AI 보세창고에 보관하였고, 2019. 12. 13.

인천항에 입항한 제4 수입물품은 2019. 12. 16. AI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

6) 원고의 이 사건 각 수입신용장 대금의 지급 및 선하증권 취득 원고는 2019. 10. 28. 이 사건 제1 수입물품의 수입대금으로 384,778.16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454,730,829원, 2019. 10. 30. 이 사건 제2 수입물품의 수입대금으로 67,801,977엔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734,824,266원, 2019. 10. 25. 이 사건 제3 수입물품의 수입대금으로 922,185.98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1,092,698,167원, 2019. 12. 27. 제4 수입물품의 수입대금으로 657,720.07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770,453,289원을 각 대지급하고,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1	O	2019. 10. 28.	384,778.16달러	454,730,829
2	Q	2019. 10. 30.	67,801,977엔	734,824,266
3	S	2019. 10. 25.	922,185.98달러	1,092,698,167
4	T	2019. 12. 27.	657,720.07달러	770,453,289
합계	3,052,706,551			

7) 제1 내지 3 신용장 대금 채무에 대한 대환 원고는 2019. 11. 1. M의 제1 내지 3 신용장 대지급채무를 대환하기 위하여, ① 제1 신용장 대지급채무에 대하여는 여신금액을 3억 원으로, ② 제2 신용장 대지급채무에 대하여는 여신금액을 7억 원으로, ③ 제3 신용장 대지급채무에 대하여는 여신금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대출금으로 위 각 대지급채무를 대환(이하 위 대환에 따라 M이 부담하는 각 대환금채무를 위 각 신용장 대지급채무에 대응하여 '제 1 내지 3 대환금채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각 대환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8)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반출 C는 이 사건 제1, 3, 4 수입물품의 경우 M이 이 사건 각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나중에 D/O(화물인도지시서)를 보완하겠으니, 일단 D/O 없이 출고해 달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위 각서에 J의 직인이 날인되면, 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이를 출고하였고, 이 사건 제2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별도의 D/O나 선하증권의 제시 없이 J의 요청 내지 승인에 따라 이를

출고하였는바, 위 각 수입물품의 출고시기 및 출고 이후 재고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1 수입물품	2019. 9. 18. ~ 2019. 12. 16.	없음
제2 수입물품	2019. 9. 15. ~ 2019. 12. 26.	2.321MT2) i) 철근H-BEAM 300x300x13M 2 PCS 1.937MT, ii) 철근H-BEAM 300x300x16M 1PCS 0.384MT
제3 수입물품	2019. 10. 23. ~ 2019. 12. 30.	447.984MT3) i) 철근 SD500 19 x 10M 97Bundle 192.060MT, ii) 철근 SD500 19 x 8M 20Bundle 40.320MT, iii) 철근 SD500 22 x 11M 25Bundle 50.150MT, iv) 철근 SD500 22 x 8M 62Bundle 123.628MT, v) 철근 SD500 25 x 10M 12Bundle 23.880MT, vi) 철근 SD500 32 x 8M 9Bundle 17.946MT
제4 수입물품	2019. 12. 13. ~ 2020. 1. 3.	123.662MT4) i) 철근 HD13 x 8M 50Bundle 47.750MT, ii) 철근 HD16 x 8M 11Bundle 20.592MT, iii) 철근 HD22 x 8M 19Bundle 37.886MT, iv) 철근 HD10 x 8M 10Bundle 9.410MT, v) 철근 SD500 22 x 10M 4Bundle 8.024MT

9) C에 대한 파산선고 및 소송절차의 수계 C는 2020. 8. 3. 인천지방법원 2020하합1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D(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파산관재인은 그 후 C에 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10) 원고의 채권양도 원고는 2021. 3. 4. AK와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선하증권과 관련된 채권을 포함한 채권 일체를 AK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3. 30. AK,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서 AK의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 3. 31. 자 채권양도통지서의 송달로 M에게, 2022. 10.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피고들에게 각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자백간주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7, 19, 20호증, 을라 제1호증의 1, 제4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기초사실 및 자백간주에 의하면, M은 원고에게, ① 제1 대환금채무 원본 3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6. 11.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내지 약정지연손해금 12,338,292원 합계 312,338,292원의 대출원리금, ② 제2 대환금채무 원본 중 698,513,805원 및 제2 대환금채무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6. 11.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내지 약정지연손해금 28,503,295원 합계 727,017,100원의 대출원리금, ③ 제3 대환금채무 원본 1,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19. 1. 1.부터 2020. 6. 11.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내지 약정지연손해금 48,526,395원 합계 1,048,526,395원의 대출원리금, ④ 제4 신용장대금 대지급채무 원본 770,453,289원 및 그에 대한 대지급일인 2019. 12. 17.부터 2020. 6. 11.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내지 약정지연손해금 31,831,156원 합계 2,890,166,232원(312,338,292원 + 727,017,100원 + 1,048,526,395원 + 802,284,4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제1 대환금채무의 약정지연손해금은 연 10.11%, 제2 대환금채무의 약정지연손해금은 연 10.04%, 제3 대환금채무의 약정지연손해금은 연 10.01%, 제4 신용장대금 대지급채무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연 9%인 사실, 피고 B는 M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채권을 순차적으로 AK,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위 양도사실을 M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M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890,166,232원 및 위 돈 중, ① 30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20.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7.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 연 10.11%, ② 698,513,805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20.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7.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 연 10.04%, ③ 1,00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20.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7.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 연 10.01%, ④ 770,453,289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20.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7.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 연 9%,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초 이 사건 소송에서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C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 이후 청구취지를 C에 대한 파산채권(2,733,171,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C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가) 관련 법리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거래는 보통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고 수출자와 수입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므로, 화물 인도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율이 요구된다. 특히 선하증권은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 권원증권이라고 할 것인바, 상법 제861조, 제129조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33조는 선하증권의 교부는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업자로서는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거나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받은 후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으로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을 반출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참조).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대법원 2009다398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C는 K, L과의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보세창고에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을 포함한 철강 제품 등을 운송선사 등으로부터 인도받아 이 사건 각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영업을 영위해 온 사실, C가 이 사건 각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을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의 제시 없이 J의 요청 내지 승인에 따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보세창고를 운영해 온 C는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운송인에 대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데,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지시 없이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파산관재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파산관재인인은 C는 J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반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가 J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을 반출했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의 제시 없이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을 반출한 C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피고 파산관재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파산관재인인은 또한 C는 세관장으로부터 보세창고 특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세창고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세창고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련 법리의 취지를 고려하면 C는 본인의 계산과 이익으로 이 사건 각 보세창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을 보관하였으므로, C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운송인과 사이에서 위 각 수입물품에 대한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보세창고 특허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자가 오히려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 파산관재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파산관재인인은 설령 C가 보세창고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등), 이 사건 각 수입물품에 대한 반출이 있기 전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어 통관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어 보세창고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보세창고업자와 운송인 사이에 성립된 묵시적 임치계약이 화물의 인도시가 아닌 수입신고 수리시에 종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통관절차와 보세화물에 대한 각종 고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5), 보세화물에 관한 고시6))에서도 수입신고 수리 이후의 수입물품 반출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점, ③ 피고 파산관재인인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보세창고업자가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할 경우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입물품의 반출 시까지는 보세창고업자로서의 묵시적 임치계약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파산관재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C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 가)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이 무단반출됨으로써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는 무단반출 당시의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등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수입대금(= 원고의 신용장 대지급금) 상당액을 위 각 수입물품 반출 당시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반출되고 잔존한 화물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수입물품 별로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① 제1 수입물품의 경우 전부 무단반출되었는바, 해당 물품의 가액은 제1 신용장의 대지급금 384,778.16달러를 2019. 10. 28. 당시7) 환율로 환산한 454,730,829원이고, ② 제2 수입물품의 경우, 철근H-BEAM 300x300x13M 2 Bundle 1.937MT와 철근H-BEAM 300x300x16M 1 Bundle 0.384MT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물품이 무단반출되었는바, 제2 신용장의 대지급금 67,801,977엔을 2019. 10. 30. 당시 환율로 환산한 734,824,266원에서 잔존 물품의 가액 1,480,025원8) 을 공제한 733,344,241원이며, ③ 제3 수입물품의 경우 i) 철근 SD500 19 x 10M 97Bundle 192.060MT, ii) 철근 SD500 19 x 8M 20Bundle 40.320MT, iii) 철근 SD500 22 x 11M 25Bundle 50.150MT, iv) 철근 SD500 22 x 8M 62Bundle 123.628MT, v) 철근 SD500 25 x 10M 12Bundle 23.880MT, vi) 철근 SD500 32 x 8M 9Bundle 17.946MT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물품이 무단반출되었는바, 제3 신용장의 대지급금 922,185.98달러를 2019. 10. 25. 당시 환율로 환산한

1,092,698,167원에서 잔존 물품의 가액 252,555,458원9) 을 공제한 840,142,709원이고, ④ 제4 수입물품의 경우, i) 철근 HD13 x 8M 50Bundle 47.750MT, ii) 철근 HD16 x 8M 11Bundle 20.592MT, iii) 철근 HD22 x 8M 19Bundle 37.886MT, iv) 철근 HD10 x 8M 10Bundle 9.410MT, v) 철근 SD500 22 x 10M 4Bundle 8.024MT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물품이 무단반출되었는바, 제4 신용장의 대지급금 677,720.07달러를 2019. 12. 27. 당시 환율로 환산한 770,453,289원에서 잔존 물품의 가액 65,499,756원10)을 공제한 733,344,241원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무단반출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총 2,733,171,812원(454,730,829원 + 733,344,241원 + 840,142,709원 + 704,954,033원)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파산관재인은 제2, 3, 4 수입물품 중 위와 같이 무단반출되고 남은 철근을 처분하여 331,060,729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로 제출된 올라 제64호증(철강대금정산파일)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분배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 파산관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참고로 원고승계참가인은 무단반출되고 남은 철근의 가액을 제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다).

다) 한편 C가 2020. 8. 3.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 파산관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 파산관재인은 그 후 C에 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사실, 원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에서 파산채권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4) 파산채권의 확정 가) 원고승계참가인은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금(2,733,171,812원)에 더하여, 이에 대한 소장부분이(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된 2020.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파산채권으로 확정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런데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은 파산선고일인 2020. 8. 3.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부분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다) 한편 지연손해금율 대하여 살피건대,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등 참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C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위 손해배상금 원금 2,733,171,812원이고, 후순위파산채권은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된 2020.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바(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C의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시 이후임이 명백한 2020. 9.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확정한다),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정을 구할 이익도 있다.

라. 피고 E, F, G, I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제1, 3 수입물품의 운송인, 피고 F은 제2 수입물품의 운송인, 피고 G은 제4 수입물품의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자에게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운송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이 무단반출됨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위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무단반출은 위 각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바, 위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 I은 피고 G의 국내 선박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제4 수입물품의 무단반출은 위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E은 피고 B, J, K, L, 파산채무자 C와 연대하여 제1, 3 수입물품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피고 F은 피고 B, J, L, 파산채무자 C와 연대하여 제2 수입물품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피고 G, 피고 I은 피고 B, J, K, 주식회사, 파산채무자 C와 연대하여 제4 수입물품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수입물품의 운송인은 W이고, 제2 수입물품의 운송인은 Z이며, 제3 수입물품의 운송인은 AC이고, 제4 수입물품의 운송인은 AF이다. 나아가 을바 제1, 2호증, 을사 제1호증, 을자 제7, 8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 F, G, I은 위 각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 내지 국내 선박대리점의 지방대리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E, F, G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운송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원고승계참가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무단으로 반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각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무단으로 반출되도록 공모, 방조하여 이에 가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점(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등 참조), 화물 인도 및 선하증권 상환 등의 업무는 해상운송인의 업무일 뿐 선박대리점의 업무가 아닌 점, 위 각 피고들이 운송인들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수령에 대하여 업무 의뢰 또는 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수입물품 운송인들의 국내대리점, 또는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은 지방대리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무단반출행위에 가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원고승계참가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F, G, 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세라

판사김민지

판사박재남

별지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과 당초 피고였던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24. 6. 10.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각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2024. 6. 26.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이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과 당초 피고였던 L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4. 6. 26.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각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24. 7. 19.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i) 철근H-BEAM 300x300x13M 2 PCS 1.937MT, ii) 철근H-BEAM 300x300x16M 1PCS 0.384MT

3) i) 철근 SD500 19 x 10M 97Bundle 192.060MT, ii) 철근 SD500 19 x 8M 20Bundle 40.320MT, iii) 철근 SD500 22 x 11M 25Bundle 50.150MT, iv) 철근 SD500 22 x 8M 62Bundle 123.628MT, v) 철근 SD500 25 x 10M 12Bundle 23.880MT, vi) 철근 SD500 32 x 8M 9Bundle 17.946MT

4) i) 철근 HD13 x 8M 50Bundle 47.750MT, ii) 철근 HD16 x 8M 11Bundle 20.592MT, iii) 철근 HD22 x 8M 19Bundle 37.886MT, iv) 철근 HD10 x 8M 10Bundle 9.410MT, v) 철근 SD500 22 x 10M 4Bundle 8.024MT

5) 제2조(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칙) ① 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제도의 시행목적이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정당한 수입신고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6) 제10조(반출확인 및 반출신고) ① 운영인은 수입신고수리 또는 반송신고수리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불법행위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바, 계산의 편의상 그 기간에 포함된 원고의 신용장 대지급일을 환율 환산의 기준일로 특정한다. 이하 같다.

8) 철근H-BEAM 300x300x13M 2 PCS 1.937MT와 철근H-BEAM 300x300x16M 1PCS 0.384MT의 MT당 가액은 59,500 JPY이고, 신용장 대지급일인 2019. 10. 30. 당시 환율은 1,071.71원/100JPY인바(갑제45호증의 1), 철근H-BEAM 300x300x13M 2 PCS 1.937MT의 가액은 1,235,161원(59,500JPY x 1.937MT x 1,071.71원/1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철근H-BEAM 300x300x16M 1PCS 0.384MT의 가액은 244,864원(59,500JPY x 0.384MT x 1,071.71원/100)으로, 위 각 철근의 합계 가액은 1,480,025원(1,235,161원 + 244,864원)이다.

9) 위 각 철근의 MT당 가액은 각 480 USD이고(갑제4호증의 3 참조), 신용장 대지급일인 2019. 10. 25. 당시 환율은 1,174.50원/USD인바(갑제45호증의 2), i) 철근 SD500 19 x 10M 97Bundle 192.060MT의 가액은 108,275,745원(480USD x 192.060MT x 1,174.50원)이고, ii) 철근 SD500 19 x 8M 20Bundle 40.320MT의 가액은 22,730,803원 (480USD x 40.320MT x 1,174.50원)이며, iii) 철근 SD500 22 x 11M 25Bundle 50.150MT의 가액은 28,272,564원(480USD x 50.150MT x 1,174.50원)이고, iv) 철근 SD500 22 x 8M 62Bundle 123.628MT의 가액은 69,696,521원(480USD x 123.628MT x 1,174.50원)이고, v) 철근 SD500 25 x 10M 12Bundle 23.880MT의 가액은 13,462,588원(480USD x 23.880MT x 1,174.50원)이고, vi) 철근 SD500 32 x 8M 9Bundle 17.946MT의 가액은 10,117,237원(480USD x 17.946MT x 1,174.50원)으로, 위 각 철근의 합계 가액은 252,555,458원(108,275,745원 + 22,730,803원 + 28,272,564원 + 69,696,521원 + 13,462,588원 + 10,117,237원)이다.

10) 철근 HD13 x 8M, 철근 HD16 x 8M, 철근 HD22x8M의 MT당 가액이 가 455 USD이고, 철근 HD10x8M과 철근 SD500 22 x 10M의 가액이 각 465USD이고(갑 제4호증의 4 참조), 신용장 대지급일인 2019. 12. 27. 당시 환율은 1,160.50원/USD인바(갑 제45호증의 3), i) 철근 HD13 x 8M 50Bundle 47.750MT의 가액은 25,213,313원(455USD x 47.750MT x 1,160.50원)이고, ii)

철근 HD16 x 8M 11Bundle 20.592MT의 가액은 10,873,142원($455\text{USD} \times 20.592\text{MT} \times 1,160.50\text{원}$)이고, iii) 철근 HD22 x 8M 19Bundle 37.886MT의 가액은 20,004,849원($455\text{USD} \times 37.886\text{MT} \times 1,160.50\text{원}$)이고, iv) 철근 HD10 x 8M 10Bundle 9.410MT의 가액은 5,077,941원($465\text{USD} \times 9.410\text{MT} \times 1,160.50\text{원}$)이고, v) 철근 SD500 22 x 10M 4Bundle 8.024MT의 가액은 4,330,011원($465\text{USD} \times 8.024\text{MT} \times 1,160.50\text{원}$), 위 각 철근의 합계 가액은 65,499,256원($25,213,313\text{원} + 10,873,142\text{원} + 20,004,849\text{원} + 5,077,941\text{원} + 4,330,011\text{원}$)원이다.